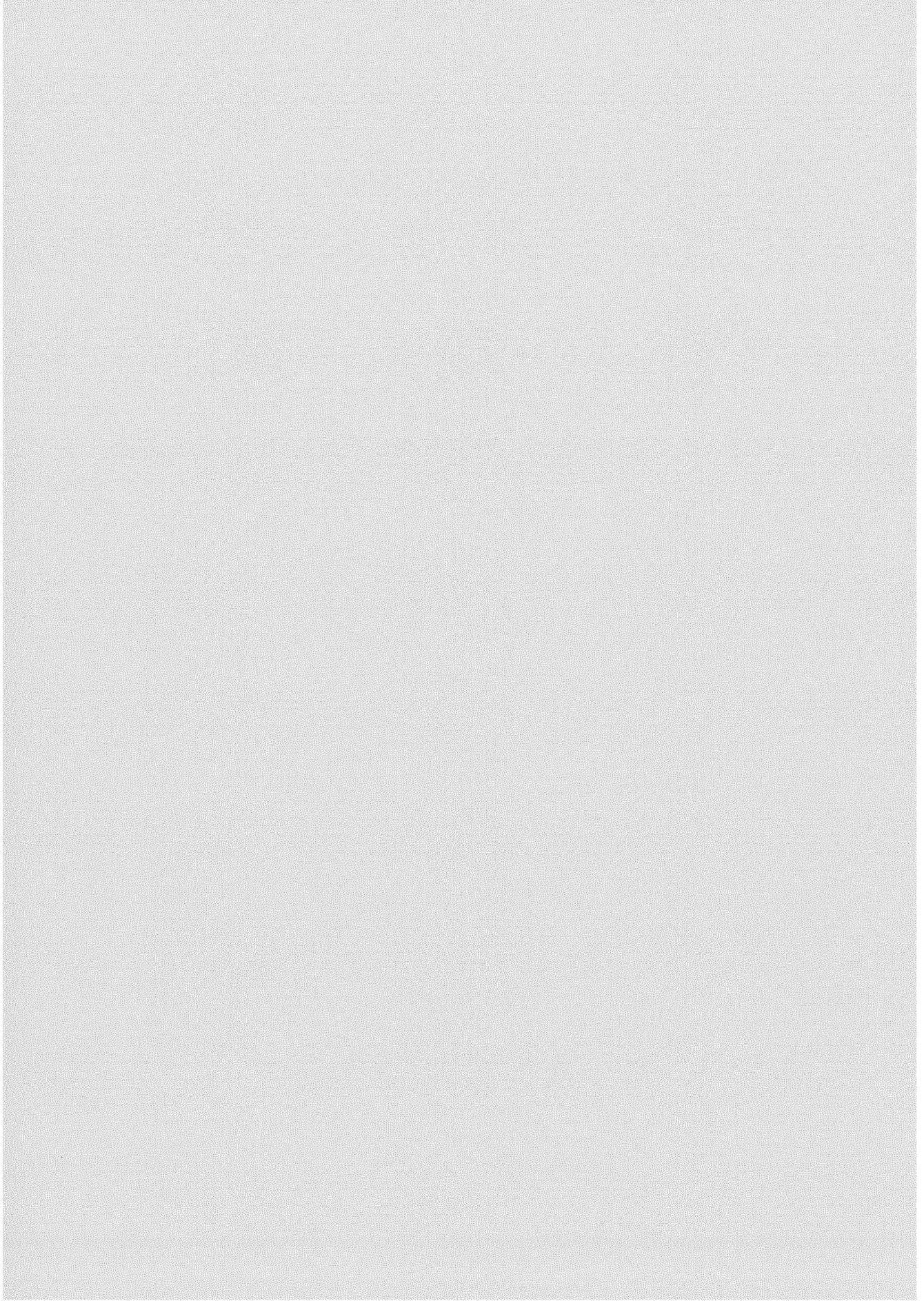


第110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0.2.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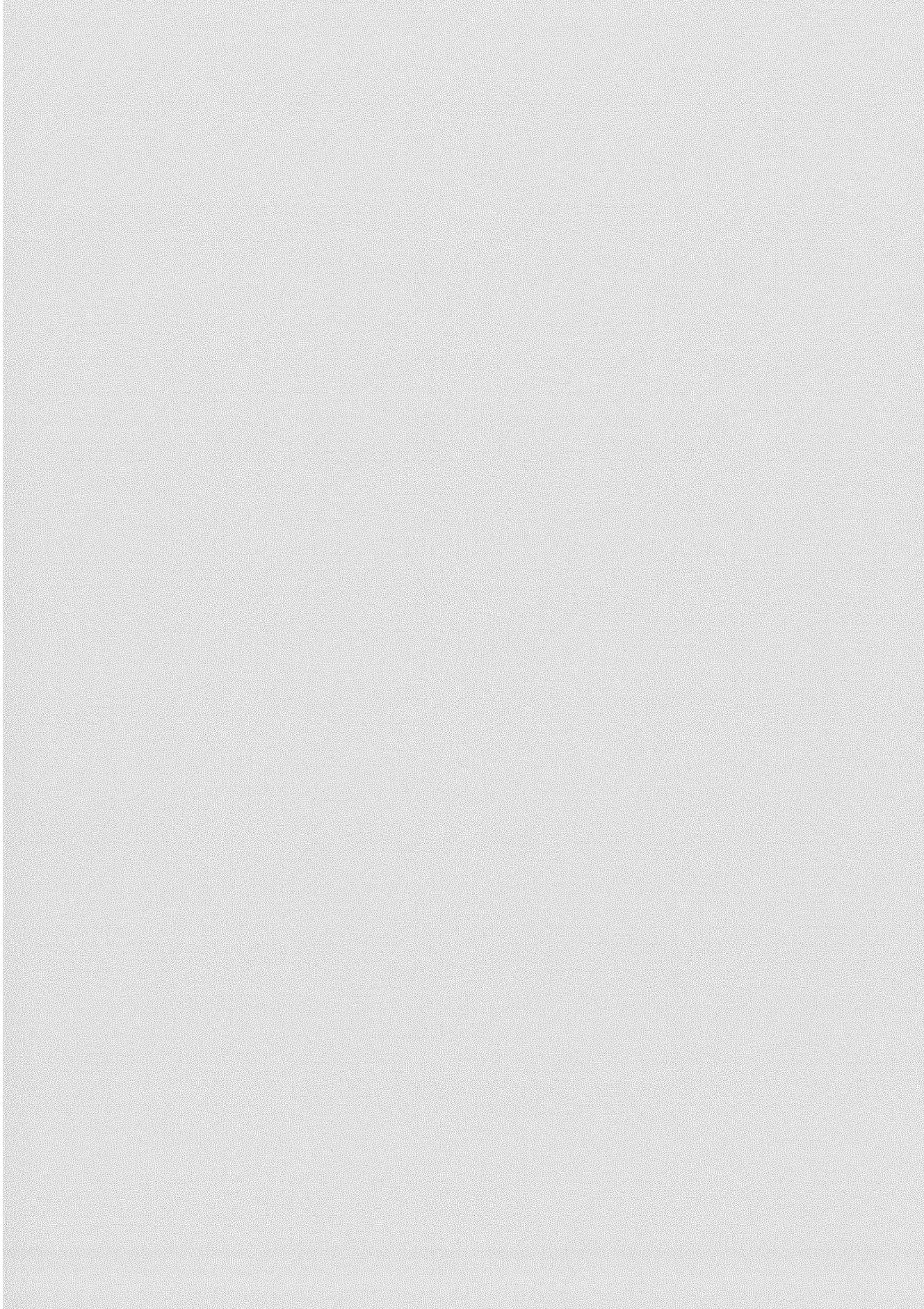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10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2000·2·통근 제68호

- I. 개회식3
- II. 제11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5
- III. 제11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9
- IV. 부 록
 - 1. 의사일정 13
 -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5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2월 8일 (화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110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유근영)

(11시 00분 개식)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의사담당 유근영

(11시 02분 폐식)

지금부터 제11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최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최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2월 8일 (화요일) 11시 02분

議事日程 (제1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1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박영하)
2. 제11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이기수위원 외 5인)

(11시 02분 개의)

● 의장 조일환

구정으로 오늘이 새해를 맞는 첫 임시회입니다.

임시회에 앞서서 저희 오늘 위원회의 의정활동비, 이것에 관한 조례를 단독으로 상정하게 된 이러한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저희가 많은 협의 끝에 오늘의 회의를 개최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만은 집행청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의정활동비 의회수당

에 관한 이러한 내용이 좀더 일찍 '99년도에 그것이 개정이 돼서 교육위원회에 이첩이 됐으면 이것이 이미 '99년도에 의결을 했는데 2000년도에 순탄하게 이것이 적용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지지부진 이러한 조례 개정이 늦은 관계로 오늘에서야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결을 거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일부에서는 마치 세비를 우리 스스로 올리고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비취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세비가 아니고

(제110회-제1차 본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정활동비 또 회의일수에 관한 수당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내일 이틀간에 걸친 이 회의가 60일을 초과할 수도 없고 60일 이내에서 저희들이 개최하는 회의임을 밝혀 드립니다.

이점 집행청에서도 오해 없으시도록 부탁을 올립니다.

그러면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설 명절을 모두 즐겁게 보내셨는지, 여러분들께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눔)

1. 경과보고

(11시 04분)

● 의사과장 박영하

의사과장 박영하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 1월 3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기수위원님의 5인 위원님이 서면으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고 제2000-2호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회기 의결안건처리 결과입니다.

지난 제109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 하신 바 있는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2월 1일에 열린 제1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위원 발의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2. 제11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06분)

● 의장 조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미 통보드린 바와 같이 제11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으로 하여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안건인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조례심사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아니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한 후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제11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2월 8일부터 2월 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의사일정(안) : 별첨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8분)

●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제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해서 이충원 위원님께서서는 나오셔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충원위원 발언대로 나옴)

● 이충원 위원

교육위원 이충원입니다.

본인 외 다섯 분 위원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각각 1999년 8월 31일자와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회의수당의 명칭을 변경하고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을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1월 8일자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교육위원 국외여비중 일비와 숙박비 지급단가를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1조 및 제3조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회의수당 지급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 및 7조에있어서 의정활동비 지급단가를 월 60만원에서 30만원이 인상된 90만원으로 하고 회기수당 지급단가를 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8조제2항과 관련한 별표 2의 교육위원 국외여비 지급기준에 있어서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를 10% 더 인상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안과 신규조문대비,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충원위원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2

(끝에 실음)

(제110회-제1차 본회의)

● 의장 조일환

이충원위원님께서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 개정조례안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도의회가 2월에 개의되므로 부득이 4월에야 있을 도의회를 미룬다면은 실제 시행은 5월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기간적인 문제로 오늘의 회의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금일 회기에는 김광수, 손만재 두분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도 역시 오전 11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의장 조일환, 부의장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 출석공무원 : 13명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초등교육과장 김천호,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교육정보화과장 정호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이기수,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의사일정(안) : 별첨1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2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2월 9일 (수요일) 11시 01분

議事日程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기수위원 외 5인)

(11시 01분 개의)

● 의장 조일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이 미끄럽고 날씨가 추운데도 오늘 등원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빠짐없이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셨던 교육위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 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조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 위원을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이충원위원님께서 하여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산지 여쭙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110회-제2차 본회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의결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바로 교육감에게 이송하여 차기 도의회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정 관계관계서는 수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폐회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고 외람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하 신문에 이번 의결하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따가운 평가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칫 우리 위원님들이 수당인상을 발의해서 자발적으로 한 이러한 쪽의 시각이 높은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도 IMF 이후에 상당한 재정에 대

한 어려움도 이제 다소는 해소되고 또 위원님들이 열심히 보다 더 위원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국가의 소명으로 이번에 상위법에서 이것이 인상이 결정돼서 저희 하위 조례로 이것을 승인을 하고 추진하는 그러한 따름입니다.

우리 교육계나 사회에서 여러 따가운 시각으로 저희 교육위원들을 보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의연하게 더욱 그마만큼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교육계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서 제11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폐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조일환, 부의장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0 출석공무원 : 9명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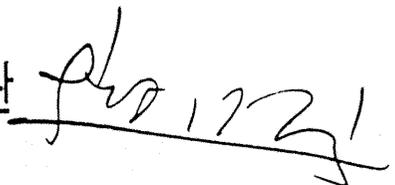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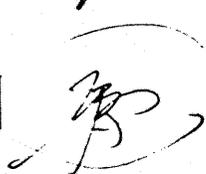
총무과장 이기수,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

시설과장 오형균.

제11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0. 2. .

의 장	조 일 환	
위 원	김 광 수	
위 원	손 만 재	
의사국장	신 춘 우	

(별첨1)

議 事 日 程

第110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0.2.8.~2.9.(2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p>2000.2.8.(火)</p> <p>10:30</p> <p>11:00</p>	<p><input type="checkbox"/> 教育委員 協議會 : 教育委員室</p> <p><input type="checkbox"/> 開會式</p> <p>[第1次 本會議 開議]</p> <p>1. 第110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 會期 : 2000. 2. 8. ~ 2. 9. (2日間)</p> <p>2. 忠清北道教育委員會教育委員議政活動費等의 支給에 關한 條例 中改正條例案(提案說明)</p> <p>[第1次 本會議 散會]</p> <p><input type="checkbox"/> 議案審議</p>	
<p>2. 9.(水)</p> <p>11:00</p>	<p>[第2次 本會議 開議]</p> <p>1. 忠清北道教育委員會教育委員議政活動費等의 支給에 關한 條例 中改正條例案</p> <p>[第2次 本會議 散會]</p> <p>※ 閉 會</p>	

(별첨2)

의안번호	제 110-1 호
의 결 년 월 일	2000. 2. . (제 110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이기수위원외 5인
제출년월일	2000. 1. 29.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10-1 호
----------	-----------

발의년월일 : 2000년 1월 29일

발 의 자 : 이기수위원 외 5인

1. 개정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법률 제6,002호/ '99.8.31 개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672호 / '99.12.31 개정)이 개정되어 회기수당의 명칭을 변경하고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인상 조정하고자 하며,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16,691호 / 2000.1.8)됨에 따라 교육위원 국외여비 중 일비와 숙박비 지급단가를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회기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3조).
- 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액을 인상함(안 제6조, 제7조 및 별표 2).
 - 의정활동비 : 월 600,000원 → 월 900,000원
 - 회기수당 : 일 60,000원 → 일 80,000원
 - 국외여비 :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를 10% 인상함.

3. 개정안 : 불임 참조

4.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 참조
- 나. 관계법령(발췌) : 불임 참조
- 다. 예산조치사항
 - 의정활동비 등 추가소요 인상분은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반영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회기수당 지급)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 하되, 회기중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6조중 “500,000원”을 “700,000원”으로 하고, “100,000원”을 “200,000원”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60,000원”을 “회기수당은 회기일수 1일에 80,000원”으로 한다.

[별표 2]중 일비(1일당)란과 숙박비(1야당)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비고 1중 “일비·숙박비·식비”를 “숙박비·식비”로 한다.

일비(1일당)	숙박비(1야당)
40	가등급 186
	나등급 135
	다등급 107
	라등급 91
35	가등급 151
	나등급 109
	다등급 84
	라등급 72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호·제2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지방자치법 제32조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교육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회의수당 지급) 위원이 회기중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p> <p>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위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5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100,000원으로 하고 매월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p> <p>제7조(회의수당 지급기준) ①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60,000원으로 한다. ②—③ (생략)</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지방자치법 제32조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교육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회의수당 지급) 위원이 회기중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p> <p>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위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5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100,000원으로 하고 매월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p> <p>제7조(회의수당 지급기준) ①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60,000원으로 한다. ②—③ (생략)</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지방자치법 제32조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교육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회의수당 지급) 위원이 회기중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p> <p>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위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5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100,000원으로 하고 매월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p> <p>제7조(회의수당 지급기준) ①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60,000원으로 한다. ②—③ (생략)</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지방자치법 제32조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교육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회의수당 지급) 위원이 회기중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p> <p>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위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5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100,000원으로 하고 매월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p> <p>제7조(회의수당 지급기준) ①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60,000원으로 한다. ②—③ (생략)</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지방자치법 제32조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교육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회의수당 지급) 위원이 회기중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p> <p>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위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5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100,000원으로 하고 매월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p> <p>제7조(회의수당 지급기준) ①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60,000원으로 한다. ②—③ (생략)</p>																													
<p>[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25%;">일비(1일당)</th> <th style="width: 25%;">숙박비(1야당)</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의장· 부의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가등급 30</td> <td style="text-align: center;">가등급 169</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나등급 30</td> <td style="text-align: center;">나등급 12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다등급 30</td> <td style="text-align: center;">다등급 97</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라등급 30</td> <td style="text-align: center;">라등급 83</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위 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가등급 25</td> <td style="text-align: center;">가등급 137</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나등급 25</td> <td style="text-align: center;">나등급 99</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다등급 25</td> <td style="text-align: center;">다등급 76</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라등급 25</td> <td style="text-align: center;">라등급 65</td> </tr> </tbody> </table>		구 분	일비(1일당)	숙박비(1야당)	의장· 부의장	가등급 30	가등급 169	나등급 30	나등급 123	다등급 30	다등급 97	라등급 30	라등급 83	위 원	가등급 25	가등급 137	나등급 25	나등급 99	다등급 25	다등급 76	라등급 25	라등급 65	<p>[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25%;">일비(1일당)</th> <th style="width: 25%;">숙박비(1야당)</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의장· 부의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d style="text-align: center;">가등급 186 나등급 135 다등급 107 라등급 91</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위 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5</td> <td style="text-align: center;">가등급 151 나등급 109 다등급 84 라등급 72</td> </tr> </tbody> </table>		구 분	일비(1일당)	숙박비(1야당)	의장· 부의장	40	가등급 186 나등급 135 다등급 107 라등급 91	위 원	35	가등급 151 나등급 109 다등급 84 라등급 72
구 분	일비(1일당)	숙박비(1야당)																															
의장· 부의장	가등급 30	가등급 169																															
	나등급 30	나등급 123																															
	다등급 30	다등급 97																															
	라등급 30	라등급 83																															
위 원	가등급 25	가등급 137																															
	나등급 25	나등급 99																															
	다등급 25	다등급 76																															
	라등급 25	라등급 65																															
구 분	일비(1일당)	숙박비(1야당)																															
의장· 부의장	40	가등급 186 나등급 135 다등급 107 라등급 91																															
	위 원	35	가등급 151 나등급 109 다등급 84 라등급 72																														
		<p>비고 : 1. 일비·숙박비·식비의 등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4]의 비교란에 정한 국가 및 도시별 등급을 적용한다. 2. (생략)</p>		<p>비고 : 1. 숙박비·식비..... 2. (현행과 같음)</p>																													

부칙 제2항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회의수당</u>”이라 함은 영 제14조(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준용)규정에 의한 <u>회의수당</u>을 말한다. 3. (생략)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교육위원 당해연도 <u>회의수당</u>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교육위원 당해연도 <u>회의수당</u>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되, 제5조에 규정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3. (생략) ② (생략) 	<p>제2조(정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회기수당</u>” <u>회기수당</u>..... 3. (현행과 같음)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u>회기수당</u>..... 2.....<u>회기수당</u>.....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지방자치법의 준용)

지방자치법 제5조, 제32조, 제32조의 2, 제34조의 2, 제35조의 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 2,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3조, 제59조 내지 제68조, 제74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회의의원”은 “교육위원”으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의회”·“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회위원장”으로 본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지방자치법시행령의 준용)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 2, 제17조의 2, 제17조의 4 내지 제19조,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조사소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지방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등)

① 지방회의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다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의 비용은 시·도의회의원에 한한다.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예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회기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

②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①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회의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5, 회기수당(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 6,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액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지회의출석비는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2항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도서지역(연육지역을 제외한다)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별표 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15조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의원	월 7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550,000원 이내	

[별표 6]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제15조관련)

구 분	회기수당 지급범위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범위
시·도의회의원	일 80,000원 이내	별표 7의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에 의한 교통운임(현지교통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3분의 1) 범위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일 70,000원 이내	

[별표 8]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지급범위(제15조관련)

(단위 : 미불화)

구 분		지급기준액	항공임	일 비	숙박비	식 비	준 비 금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시·도	의장· 부의장	1등정액		30	169	133	150	180	210
	의 원	1등정액		25	137	107	140	170	195
시·군· 자치구	의장· 부의장	1등정액		25	137	107	140	170	195
	의 원	2등정액		20	120	81	130	155	180

비 고 :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 범위안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2.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 국외여행자의 경우 별표 4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받은 숙박비(국외여행의 경우는 식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여행을 완료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 사용할 때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지출금액에 대한 추가지급액은 국내여행의 경우 이미 지급받은 숙박비의 10분의 3을 넘지 못하고, 국외여행의 경우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	등 급	일 비	숙박비	식 비
동표 특호의 라목해당자(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차관 제외)와 동표 제1호 해당자	가	40	186	133
	나	40	135	99
	다	40	107	72
	라	40	91	61
동표 제2호 해당자	가	35	151	107
	나	35	109	78
	다	35	84	58
	라	35	72	49

※ 해당되는 부분만 일부 발췌하였음.